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8,992,643	11,969,779
일반회계	364,794,780	10,943,843
특별회계	34,197,863	1,025,936
공기업특별회계	14,977,677	449,33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977,677	449,330
기타특별회계	19,220,186	576,606
수질개선 특별회계	6,502,272	195,068
주택사업 특별회계	4,382,815	131,48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24,044	27,721
자활기금 특별회계	1,939,500	58,18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3,051,300	91,53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59,453	7,78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0	14
기반시설 특별회계	252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160,100	64,8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